

# 결정서

사 건 : 2015-267 임상해임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REDACTED]

소속 [REDACTED]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REDACTED]

피청구인 : [REDACTED]대학교총장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심 사 일 : 2015. 7. 22.

결 정 일 : 2015. 7. 22.

피청구인이 2015. 5. 18. 청구인에게 한 임상해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 5. 26.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5. 18. 청구인에게 한 임상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사유

가. 인사발령 내용

소속	직급	성명	발령내용	발령일자	발령기간	비고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REDACTED]	임상해임	2015. 5. 15.	2015. 5. 15 ~ 2015. 8. 14.(3개월)	경주병원 정신건강 의학과

나. 인사발령 사유: 최근 3년간 진료실적 저조

1) 청구인의 진료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타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 대비 진료실적 향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개인 실적이 과평균 실적에 미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청구인의 진료 실적 : 타병원 대비 성장률(2010~2014년)>

진료과	성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개인 실적	타병원 대비 성장률	개인 실적	타병원 대비 성장률	개인 실적	타병원 대비 성장률	개인 실적	타병원 대비 성장률	개인 실적	타병원 대비 성장률	
정신건강의학과	■	1,010	168%	920	153%	805	134%	670	111%	689	114%	성장률 지속 감소

<청구인의 진료 실적 : 과평균 대비 개인 실적(2010~2014년)>

진료과	성명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비고
		개인 실적	과평균 실적	개인 실적	과평균 실적	개인 실적	과평균 실적	개인 실적	과평균 실적	개인 실적	과평균 실적	
정신건강의학과	■	1,010	1,100	920	955	805	970	670	974	689	957	성장률 지속 감소

2) 개인별 원가분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도(2,087,000원), 2011년도(65,946,000원), 2012년도(79,565,000원), 2013년도(242,925원), 2014년도(298,217,000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이는 진료실적이 매우 현저하게 하락하는 것으로서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4호의 임상진료실적이 저조한자에 해당한다.

다. 조치사항

- 환자진료, 수련의 교육 등 미참여
- 진료연구비, 특별연구비, 보직수당 등 미지급
- 임상 재임용시, 임상해임과 동일 절차 진행 후 결정

## 2. 청구인 주장

가. 해임사유로 들고 있는 “최근 3년간 진료실적 저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한 것이다.

1) 피청구인은 2013. 5.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건강증진센터, 힐링센터, 미용성형센터, 마인드바디힐링센터, 통합의학센터 등으로 구성)를 설립하였는데, 피청구인은 30억원, 경주시는 20억원, 경상북도는 20억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1.부터 당시 센터설립을 위한 실무를 맡아 대외적으로 자금유치활동을 하면서 대내적으로 센터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하였고, 2013. 6.부터 2014. 8.까지 센터장을 맡고 있었으며, 국제힐링센터의 출범 준비를 위해 2013. 2.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주5회에서 3회로 줄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진료시간이 줄었음에도 실적평가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이 센터장으로 재직할 기간 동안 타병원 대비 성장률이 110~120%로서, 이전 보다 진료실적 성장률의 지속적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진료실적이 줄지도 않았다.

다. 위 인사규정은 임상진료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를 임상해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임상해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센터에 대한 기여도는 감안하지 않고, 평면적, 외형적으로 그 이전의 기준을 토대로 실적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마. 현재까지 적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대처방안도 없이 이를 무조건 청구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인술을 펼친다는 대학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 판 단

### 가.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1997. 5. 1. [redacted]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전임강사로 신

규 임용되었고, 2007. 8. 1. 경주병원 정신과 임상교수로, 2008. 9. 1. 교수(정년보장)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4. 2. 25. 청구인을 2013년 부진교원으로 선정<sup>1)</sup>한 후 2014년 부진교원 관리계획을 통보하였고, 2015. 3. 31. 경주병원 중점관리대상 교원으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5. 4. 2.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진료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임상교수 해임을 심의하였고, 청구인에게 2015. 4. 7.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2015. 4. 20. 피청구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의학계열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3. 청구인에 대해 임상교수 해임을 의결하였다.

5)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4. 29. 청구인에 대해 임상해임 처분을 제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임상해임 의결을 하였다(임상해임기간: 2015. 5. 15.~ 2015. 8. 14.).

#### 나. 임상해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 피청구인은 임상해임 처분이 의과대학 학생의 교육 외에 환자진료, 수련의 교육 등 임상참여에 제한을 두는 조치여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의 신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교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근무조건과 직무의 연속성 및 일상생활의 안정성 등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 볼 수 있고, 대학교수는 강의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고, 강의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내렸다면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격적 법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또한 교수와 의사 두 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1) 선정기준: 비교병원 대비 진료실적이 50% 미만인 교원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한 인사발령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된다(서울행정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59873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임상해임 처분 이후에도 실제로 교원의 보수에는 변동이 없어 교원의 지위에서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은 임상의학교원의 보수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학생교육 등의 교원 신분에 대한 보수는 학교 교비에서 지급되며, 의사업무 등에 대한 진료연구비는 임상급여로써 병원수입에서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의 2015. 4. 2.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임상해임은 '진료수당 미지급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청구인의 1월~5월 임상급여명세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 4.~6.간 청구인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면, 청구인은 임상해임기간 동안 대학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수만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지급되는 진료연구비는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월별 수입은 진료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임상해임 처분 이전 보다 월 평균 3,200,000원~3,9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줄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피청구인의 임상해임은 의사 신분인 청구인을 임상진료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임상진료를 통한 교원으로서의 연구활동 및 의과대학생과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수련의에 대한 교수권을 제한할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월급여가 감소하게 되어 일상생활의 안정성이 침해되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 다. 처분사유의 인정여부

##### 1) 피청구인 관련 규정

동국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르면, 의과대학 교원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의 제청으로 해임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4호로 ‘임상진료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교원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련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되므로, 임상의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임상해임 처분은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임상해임 사유인 ‘임상진료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자’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으로 임상진료 실적이 현저히 저조해야 할 뿐만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실적 부진에 대한 충분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2) 청구인의 진료 실적 부진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진료실적 저조로 판단한 근거자료는 ① 타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과 대비한 청구인의 진료실적 ②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진료부서의 평균실적과 대비한 청구인의 진료실적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비교준거 병원으로 타 행정구역에 소재한 5개 병원(창원○○○, 포항○○, 구미○○○, 침례○○, 창원○○, 원광○○○)<sup>2)</sup>의 전문의 1인당 진료실적과 비교한 성장률을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타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비교로 삼은 병원이 소재한 행정구역은 군포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병원을 제외하곤,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주에 비해 인구수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이러한 지표의 상당부분은 의사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변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전문의 1인당 평균 진료실적만을 단순히 비교한 통계치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보기 어려워 진료실적 부진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진료실적 부진의 두 번째 근거로서 청구인이 소속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비 평균실적을 제시하고 있는

2) 2014년 기준 피청구인 병원이 소재한 경주의 총 인구수는 264,091명인 반면, 비교로 삼은 병원이 소재한 행정구역의 인구수는(구미 416,949명, 포항 518,913명, 창원 1,091,471명, 군포 286,841명, 부산 금정구 255,692명)

데, 청구인의 2010~2011년 실적은 각 1,010백만원과 920백만원으로 과평균 실적인 1,100백만원과 955백만원과 별 차이가 없다. 청구인의 소명서와 피청구인의 2013. 6. 17. 전임교원 인사발령(보직)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2014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장을 맡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2012~2014년까지의 진료실적 지표자료는 평가대상 이전 기간인 2010~2011년 보다 다수 성장률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진료시간 축소로 인해 외래환자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국제힐링센터' 설립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자금유치 활동을 하고 설립 후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이상과 같이 2012~2014년 청구인의 진료 실적이 다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청구인이 국제힐링센터 설립·운영을 맡게 되어 주당 진료 횟수가 줄어든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임상해임 처분 사유로 들은 최근 3년간 타병원의 1인당 전문의 평균 진료실적과 과평균 대비 개인실적에 근거한 지표자료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환자의 진료활동에 있어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배정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게을리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진료실적 감소원인에 대해 청구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임상진료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자'라고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임상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 있다.

####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임상해임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대상이 되고, 피청구인의 임상해임 처분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

### ▣ [ ] 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제2조(교원의 종류) ① 의학계열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이하 “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복무형태에 따라 기초의학교원, 간호학교원, 임상 의학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26조(보수) ①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분류하며, 보수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 연구비, 보직수당을 말한다.
2. 본봉이라 함은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말한다.
3. 연구비라 함은 교원의 직위에 따라 연차별로 정해진 급여를 말한다.
4. 보직수당이라 함은 교원이 맡고 있는 보직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 외에 직무여건, 근무기간, 평가결과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진료연구비는 임상 의학교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교원
2.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15일 이상 결근한 교원
3.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6개월 이상 타 기관에 파견, 연수중인 교원
4. 자비연수 및 임상해임 교원
5. 출산휴가 중인 여교원

제28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 [redacted] 대학교 의학계열 교원인사규정 》

③ 진료연구비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임상해임 대상자) 전임교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상해임 할 수 있다.

1. 근무에 태만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의료원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자
3. 기타 병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4. 임상진료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자

제39조(임상해임절차) 제39조에 의한 해임대상자에 대하여는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해임을 결정하고 법인에 보고한다.

제40조(조치) ① 임상해임자로 확정 및 통보된 자는 환자 진료, 수련 의교육 등 임상참여에 제한을 두며, 의무부총장(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임상해임자에게는 진료연구비, 특별연구비, 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임상해임내용을 교원 재임용 및 승진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2015. 7.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성삼제 성삼제

상임위원 류정섭 류정섭

위원 고영현 고영현

위원 양일선 양일선

위원 김동춘 김동춘

위원 문영기(불참)

위원 박범덕 박범덕

위원 김경배(불참)

위원 김효신 김효신



위 정본임.

2015. 8.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